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실태 및 교육 영역과 내용 탐색*

박 정 식**

Exploration of Areas and Contents of Education through the Perceptions and Actual Conditions of Special Teachers Regarding Labor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ark, Jung-Sik**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labor human rights in special school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hem, and to clarify the educational areas and contents necessary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on special schools nationwide to find out teachers' perceptions and actual conditions of labor rights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and two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to organize the content area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analyzing the literature on labor rights and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FGI) twic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using SPSS Win 21.0 version, and the Delphi analysis calculate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ntent validity ratio (CVR) for validity and importance was calculated. **[Results]** The perception of special teachers about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that while the need for prior education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s high, support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are insufficient. And in the actual situation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there are more special schools than those provided by special schools that do not provide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schools that provide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 educational support through educational materials, training hours,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teachers, homeroom teachers, and on-the-spot training teachers used materials developed by career-related institutions and materials develop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by utilizing career and vocational curriculum hours. In addition, the areas and contents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divided into 5 areas (infringement of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enhanced human rights,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dealing with unfair treatment) and 30 educational contents are confirmed. **[Conclusion]** The recognition and actual condition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as well as the educational field and content, as reveale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ful in providing educational materials related to the curriculum reflecting the field of labor human rights.

Key Words : labor rights, students with disabilities, field training,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special teachers

* 이 논문은 국립특수교육원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자료인 워크북과 지도서 개발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liso0n10@hanmail.net)
Professor of Dep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aegu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의의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여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학령기에 적절한 직업 인식과 탐색 기회, 직업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준비를 위한 실천 방안 중의 하나가 현장실습이라고 할 수 있다(오영석, 이윤우, 박원희, 200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면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운영함에 따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장애학생의 성공적 사회 전환과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운영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장애학생에게 직무를 실습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은 취업 준비 과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 받는 교내실습 환경과는 달리,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산업재해나 노동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학생은 이러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권과 관련된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9년에 실시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 및 차별의 주 가해자는 직장상사, 사업자, 직장동료이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은 장애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파악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상담 현황을 보면 고용에서의 차별이 가장 빈번한 차별 영역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2019년에 고용에서의 차별로 진정 접수된 현황을 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전체 2,716건 중 1,212건으로 고용에 있어 장애가 가장 주요한 차별 사유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애인 직장이나, 일터, 실습지 등의 노동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세밀하고 실질적인 운영방침을 통해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장실습에서 나타나는 노동인권 에 대한 여러 침해 사례들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은 현장실습에 관한 교육적 의사결정을 할 때 노동 인권에 유의해서 현장실습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장애 학생들은 노동인권 에 대한 지식, 태도, 감수성을 키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노동인권교육(정승운, 2019)을 사전에 교육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교사만으로는 현장실습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기획하고 의사결정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확인하고 현장실습 참여 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개발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경기도교육청, 2019), 개발된 자료도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위해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동인권 현장 변화를 반영한 현장실습생 및 담당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고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인권 현장을 반영한 노동인권 교육자료가 개발되어지면, 특수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 및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어 직업 현장실습 지도나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안착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인권 교육의 영역과 내용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과 장애학생의 자기보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에 대한 실태와 인식,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교육 영역 및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및 실태를 밝힌다.

둘째,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영역 및 내용 요인을 밝힌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특수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실태 및 교육자료 개발에 필요한 교육 영역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특수학교의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중등), 진로전담교사, 전공과 담당교사, 학교기업 담당교사, 전공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장애아동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 영역을 구성하기 위해 2번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1차에는 644명, 2차에는 36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Division		1st Survey		2nd Survey	
		Number of Targets (persons)	Percentage(%)	Number of Targets (persons)	Percentage(%)
Gender	male	195	30.3	120	33.1
	Fmale	449	69.7	243	66.9
Age	20s	118	18.3	57	15.7
	30s	256	39.8	135	37.2
	40s	171	26.6	108	29.8
	Over 50	99	15.4	63	17.4
Area	Seoul	33	5.1	20	5.5
	Busan	15	2.3	16	4.4
	Daegu	49	7.6	42	11.6
	Incheon	17	2.6	12	3.3
	Gwangju	25	3.9	2	.6
	Daejeon	54	8.4	50	13.8
	Ulsan	4	.6	5	1.4
	Sejong	11	1.7	7	1.9
	Gyeonggi	142	22.0	80	22.0
	Gangwon	5	.8	3	.8
	Chungbuk	64	9.9	8	2.2
	Chungnam	48	7.5	20	5.5
	Jeonbuk	37	5.7	5	1.4
	Jeonnam	40	6.2	22	6.1
	Gyeongbuk	5	.8	9	2.5
	Gyeongnam	90	14.0	61	16.8
Jeju	5	.8	1	.3	

Special Education Career	Less than 5 years	200	31.1	89	24.5
	6-10 years	156	24.2	90	24.8
	11-20 years	192	29.8	115	31.7
	21-29 years	72	11.2	54	14.9
	over 30	15	2.3	9	2.5
	none	9	1.4	6	1.7
Faculty Qualification	General teacher	81	12.6	36	9.9
	Secondary Special (general subject)	459	71.3	263	72.5
	Secondary Special (specialized course)	65	10.1	39	10.7
	Secondary Special(vocation/career)	138	21.4	86	23.7
	ect	13	2.0	6	1.7
Field Practice Guidance Experience	Yes	364	56.5	241	66.4
	No	280	43.5	122	33.6
Experience of Training Related to Field Training	Yes	230	35.7	137	37.7
	No	414	64.3	226	62.3

그리고 면담 참여자는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도 경험이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중등 특수교사 6명과 장애인과 관련된 실무경험이 있으면서 노동인권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4명으로 총 10명을 선정하여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Table 2> FGI Participant Information

Participant	Name	Region and Affiliation	Gender	Experience	Career	Remark
Teacher 1	Park○Joo	Special school in Daegu	male	○	21years	
Teacher 2	Lee○Gu	Special school in Daegu	male	○	9years	
Teacher 3	Byun○Bong	Special school in Pohang	male	○	12years	
Teacher 4	Lee○Ha	Special school in Daegu	female	○	19years	
Teacher 5	HwangBo○Jin	Special school in Daegu	male	○	7years	
Teacher 6	Park○Young	General schools in Daegu	male	○	14years	

Expert 1	Cho○Sik	Labor corporation in Seoul	male	○	17years	Labor human rights
Expert 2	Cho○Eun	Public institutions located in Gyeonggi-do	female	○	20years	Labor human rights
Expert 3	Kin○Jeong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Seoul	female	○	13years	Labor human rights
Expert 4	Lee○Young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Seoul	female	○	20years	Labor human rights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인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의 인식 및 실태 그리고 교육 내용 영역을 구성하기 위해 교사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D)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 내용의 타당성, 문제점과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2명, 진로 전담교사 1명, 전공과 교사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제점을 검토하고 어려운 용어나 잘 이해되지 않는 문항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하는 등 설문지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구성영역과 내용은 <표 3>, <표 4>와 같다.

<Table 3> 1st Questionnaire Composition Area

Domain	Sub-Domain	Contents	N. of Ques.	Response Method	
Responder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9	Optional	
	Age	20s, 30s, 40s, 50s over			
	Area	17 Cities and Provinces			
	Special Education Career	5 years or less, 6-10 years, 11-20 years, 21-29 years, 30 years or more, none			
	Faculty Qualification	general, secondary special(normal), secondary special(specialized), secondary special(vocation, career), etc.			
	Field Practice Guidance Experience	Field Practice Guidance Experience			field training experien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tudent's disability type
					student's degree of disability
Experience of Training Related to Field Training	experience of training related to field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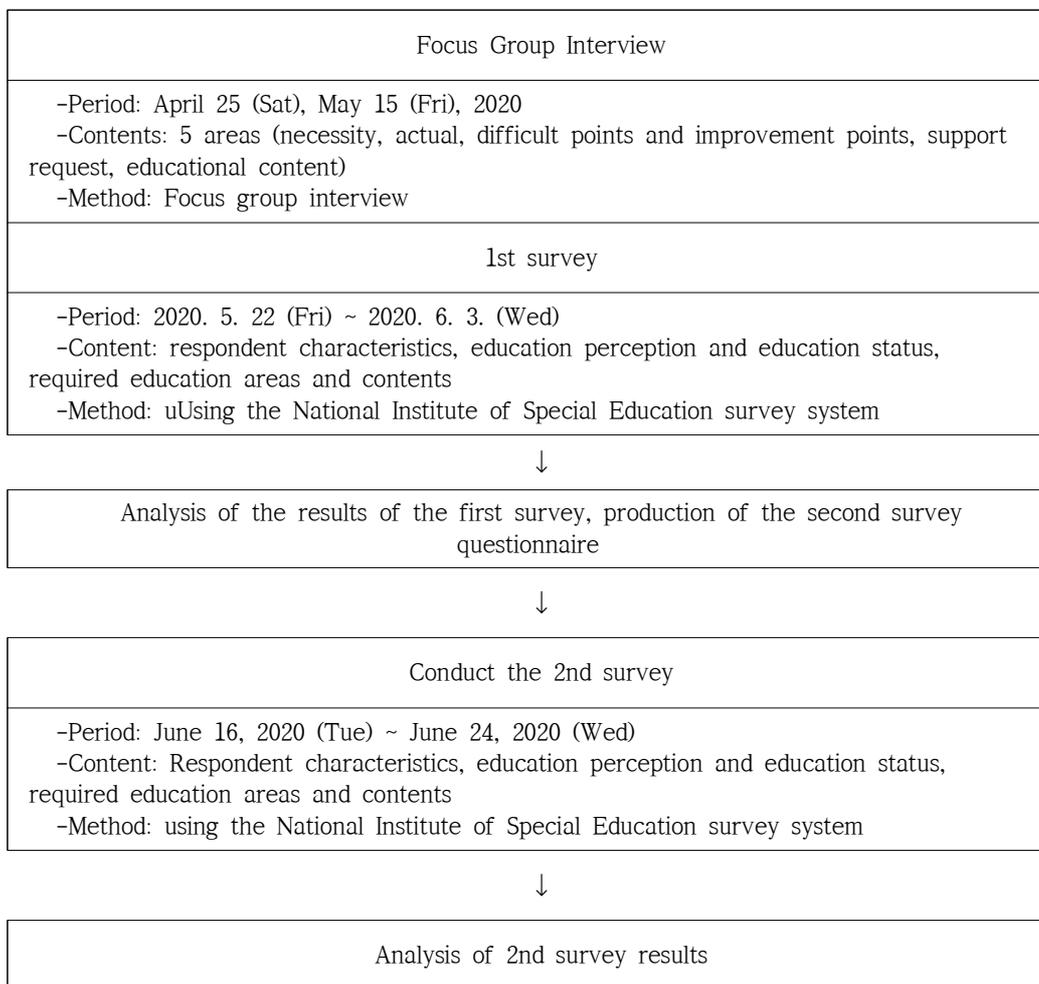
Recognition and Actual Conditions of Labor Rights Education	Education Recognition	accountability, necessity, systemicity, level of support, degree of education materials, difficulty in field training, reason for difficulty in field training, necessary support, improvement points, appropriate person for training, appropriate training time	11	Optional, Likert scale(5 points)
	Education status	whether it was implemented, whether it was implemented effectively, the content of the support, the person in charge of education, the training time, the provision of materials, the materials used, the reason for the failure	8	Optional, Likert scale(5 points) open type
Labor Rights Education Area and Contents	Labor Rights Education	validity and importance of the area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other opinions	13	Optional, Likert scale(5 points) open type
		The importance of the composition of education areas for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ther opinions		
		The importance of learning-centered on-the-job training area with enhanced human rights, other opinion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education area on labor protection, other opinions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education area, other opinion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rea for dealing with unfair treatment, other opinions		
Total			41	

<Table 4> 2nd Questionnaire Composition Area

Domain	Sub-Domain	Contents	N. of Ques.	Response Method
Responder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9	optional
	Age	20s, 30s, 40s, 50s over		
	Area	17 Cities and Provinces		
	Special Education Career	5 years or less, 6-10 years, 11-20 years, 21-29 years, 30 years or more, none		
	Faculty Qualification	general, secondary special(normal), secondary special(specialized), secondary special(vocation, career), etc.		
	Field Practice Guidance Experience	field training experien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tudent's disability type		
		student's degree of disability		
Experience of Training Related to Field Training	experience of training related to field training			
Labor Rights Education Area and Contents	Labor Rights Education	validity and importance of the area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other opinions	18	optional, Likert scale(5 points), open type
		The importance of the composition of education areas for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ther opinions		
		The importance of learning-centered on-the-job training area with enhanced human rights, other opinion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education area on labor protection, other opinions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education area, other opinion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rea for dealing with unfair treatment, other opinions		
Total			27	

3. 연구 절차

특수교사의 전문적 교육 활동과 장애학생의 자기보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에 대한 실태와 인식,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교육영역 및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및 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또한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영역 및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Figure 1] Survey procedure

4. 자료 처리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양적 정보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각 영역별 문항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영역 및 내용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타당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등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노동인권 교육의 인식 및 실태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

(1) 노동인권 교육의 사전교육

장애학생이 현장실습에 나가기 전 노동인권에 관한 교사들의 사전교육 인식의 정도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rior education in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I Know	484	75.2
I do not know	160	24.8
Total	644	100.0

(2)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장애학생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need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disagree	10	1.6
disagree	8	1.2
undecided	38	5.9
agree	247	38.4
strongly agree	341	53.0
Total	644	100.0

(3) 노동인권 교육 체계성

노동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체계성에 대해 보통 이하로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ystematicity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disagree	38	5.9
disagree	180	28.0
undecided	303	47.0
agree	96	14.9
strongly agree	27	4.2
Total	644	100.0

(4) 노동인권 교육 지원

노동인권 교육 지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지원에 대해 보통 이하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Labor rights education support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disagree	47	7.3
disagree	204	31.7
undecided	299	46.4
agree	71	11.0
strongly agree	23	3.6
Total	644	100.0

(5) 노동인권 교육 자료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에 대해 보통 이하로 교육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Labor rights education materials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disagree	70	10.9
disagree	238	37.0
undecided	265	41.1
agree	58	9.0
strongly agree	13	2.0
Total	644	100.0

(6) 현장실습의 어려움

불충분한 장애학생 노동인권 교육으로 인해 실제 현장실습의 어려움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의 인식은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불충분한 노동인권 교육으로 인해 현장실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ifficulty in field training due to insufficient labor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disagree	5	.8
disagree	46	7.1
undecided	253	39.3
agree	278	43.2
strongly agree	62	9.6
Total	644	100.0

(7) 현장실습이 어려운 이유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실행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의 인식은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실행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교육자료 부족, 교육관련 인식 및 이해 부족, 전문성 관련 연수 및 교육 부족 등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Reasons why field training is difficult (duplicate answers)

	Frequency	Percentage(%)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related to education	355	23.9
Educational environment and lack of support	309	20.8
Difficulty securing training hours (number of class hours)	127	8.5
Lack of educational materials	374	25.1
Lack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education	315	21.2
other	8	0.5
Total	1,488	100.0

(8) 노동인권 교육에서 필요한 지원 영역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서 필요한 지원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한 지원 영역에 대해,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매뉴얼 개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Areas of support necessary for labor rights education (duplicate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development of training manual	381	22.9
enhancing teacher expertise	236	14.2
materials and program development	385	23.1
creat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for practice	303	18.2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352	21.1
other	8	0.5
Total	1,665	100.0

(9) 노동인권 교육의 개선점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의 개선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개선점에 대해, 산업현장과의 네트워크, 교육매뉴얼 개발, 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Improvements in Labor Rights Education (Duplicate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Development of training manual	397	25.4
Field teacher's perception	248	15.9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educational institutions	350	22.4
Network with industrial sites	408	26.2
Securing time in the curriculum	149	9.6
other	8	0.5
Total	1,560	100.0

(10) 노동인권 교육 책임자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책임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책임자에 대해, 현장실습 담당 교사, 진로·직업교육 교과교사, 특수학교 진로 상담 교사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Those who are eligible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Homeroom teacher	47	7.3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Subject Teacher	149	23.1
Teacher in charge of field training	180	28.0
Special school career counselor	108	16.8
Life guidance, safety teacher	40	6.2
Out-of-school professionals	120	18.6
Total	644	100.0

(11) 노동인권 교육의 적절한 시간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의 적절한 시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 15>와 같다. <표 15>에서 보듯이, 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적절한 시간에 대해, 진로·직업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타 교과와 통합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Appropriate time for labor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98	15.2
Career and job-related subjects	452	70.2
Integration with other subjects	68	10.6
Free academic year system (semester system)	6	.9
Time after school	12	1.9
Other	8	1.2
Total	644	100.0

2) 노동인권 교육의 실태

(1) 노동인권 교육의 실시 여부

장애학생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특수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Whether or not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s implemented

	Frequency	Percentage(%)
doing	244	37.9
not doing	400	62.1
Total	644	100.0

(2)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적 실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17>와 같다. <표 17>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보통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7> Whethe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is effectively implemented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disagree	3	1.2
disagree	14	5.7
undecided	145	59.4
agree	70	28.7
strongly agree	12	4.9
Total	244	100.0

(3) 노동인권 교육의 지원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 지원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에서 나타나듯이, 특수학교는 교육자료 확보, 교육시간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순서로 높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 Areas supported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curing educational materials (programs)	103	30.3
Training opportunities provided	47	13.8
Securing training hours (number of class hours)	80	23.5
Securing dedicated personnel for education	33	9.7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50	14.7
Other	27	7.9
Total	340	100.0

(4) 노동인권 교육 담당자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의 담당자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에서 나타나듯이, 진로·직업교육 교사, 담임교사, 현장실습 담당교사 순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9> Person in charge of labor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Homeroom teacher	89	27.6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Subject Teacher	90	28.0
Teacher in charge of field training	74	23.0
Special school career counselor	22	6.8
Life guidance, safety teacher	10	3.1
Out-of-school professionals	37	11.5
Total	322	100.0

(5) 노동인권 교육 실시 시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의 실시 시간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나타나듯이, 진로·직업 관련 교과 시간, 타 교과와 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순으로 시간을 노동인권 교육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0> Hours of Labor Rights Training

	Frequency	Percentage(%)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46	15.0
Career and job-related subjects	183	59.8
Integration with other subjects	54	17.6
Free academic year system (semester system)	2	0.7
Time after school	6	2.0
Other	15	4.9
Total	306	100.0

(6) 노동인권 교육의 자료 구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 나타나듯이, 보통이하로 낮게 교육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 Degree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materials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disagree	18	7.4
disagree	81	33.2
undecided	117	48.0
agree	21	8.6
strongly agree	7	2.9
Total	244	100.0

(7) 노동인권 교육에 활용하는 자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 나타나듯이, 진로·직업교육 유관 기관 개발 자료, 교과서 및 교과서 보완자료, 교육청 개발 자료 순으로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2> Materials used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Textbooks and textbook supplementary materials	90	21.1
Office of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development materials	85	19.9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related institution development materials	109	25.5
Private enterprise development data	66	15.5
Teacher self-developed materials	66	15.5
Other	11	2.6
Total	427	100.0

(8)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특수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나타나듯이, 교육관련 인식 및 이해 부족, 교육자료 부족, 전문성 관련 연수 및 교육 부족 순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3> Reasons for Not Conducting Labor Rights Education (Duplicate Response)

	Frequency	Percentage(%)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related to education	208	26.4
Educational environment and lack of support	122	15.5
Difficulty securing training time	104	13.2
Lack of educational materials	176	22.3
Lack of professional training and education	126	16.0
other	53	6.7
Total	789	100.0

2. 노동인권 교육의 영역 및 내용 요인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영역 및 내용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인 현장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노동인권 교육 영역 및 내용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조화한 노동인권 교육 영역 및 내용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매회 타당도와 중요도를 평정할 수 있도록 조사지를 작성하여 델파이 위원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다음,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노동인권 교육 영역

노동인권 교육 영역 및 내용의 중요도 평균은 4.53,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은 .93으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인 문항의 타당도와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4>와 같다.

<Table 24> Validity and Importance of Labor Rights Education Area

Labor rights education area	Validity (CVR)	Importance	
		M	SD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0.95	4.51	0.77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reinforced human rights	0.92	4.46	0.78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0.92	4.47	0.77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0.92	4.58	0.73
Coping with unfair treatment	0.94	4.63	0.72
Total	0.93	4.53	0.75

(2)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교육 내용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6개의 교육 내용의 중요도 평균은 4.46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5>와 같다.

<Table 25>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ducating content		Importance	
		M	SD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①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labor	4.29	0.83
	② The value of labor	4.30	0.83
	③ Workers' legitimate rights	4.55	0.71
	④ Labor and Human Rights Violation Case	4.56	0.72
	⑤ Changes in labor rights and social weakness	4.46	0.75
	⑥ Professional ethics to be observed in the company	4.59	0.70
	Total	4.46	0.76

(3) 인권이 강화된 학습 중심 현장 실습 교육 내용

인권이 강화된 학습 중심 현장 실습 교육 내용의 중요도 평균은 4.40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6>과 같다.

<Table 26> Importance of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reinforced human rights

Educating content		Importance	
		M	SD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reinforced human rights	① The concept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4.21	0.88
	② Types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4.24	0.86
	③ Procedure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4.32	0.84
	④ Preparation of standard agreement for field practice	4.50	0.78
	⑤ Writing consent form for participation in industry field training	4.52	0.76
	⑥ Preparation of labor contract	4.61	0.72
	Total	4.40	0.81

(4) 근로보호의 이해 교육 내용

근로보호의 이해 교육 내용의 중요도 평균은 4.60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7>과 같다.

<Table 27>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Educating content		Importance	
		M	SD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① Working hours (practice hours)	4.61	0.69
	② Work restrictions	4.54	0.71
	③ Rest, holiday, vacation	4.61	0.69
	④ Wage (training allowance)	4.64	0.68
	⑤ Unpaid wages	4.65	0.68
	⑥ Welfare benefits	4.56	0.71
	Total	4.60	0.69

(5) 양성평등과 성희롱 교육 내용

양성평등과 성희롱 교육 내용의 중요도 평균은 4.61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8>과 같다.

<Table 28>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education content

Educating content		Importance	
		M	SD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① Concept of gender equality	4.45	0.79
	② Adult rights	4.56	0.73
	③ Concepts and typ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4.62	0.71
	④ Exampl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4.63	0.70
	⑤ How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4.72	0.64
	⑥ Sexual violence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4.67	0.68
	Total	4.61	0.71

(6) 부당대우 대처 교육 내용

부당대우 교육 내용의 중요도 평균은 4.61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9>와 같다.

<Table 29>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dealing with unfair treatment

Educating content		Importance	
		M	SD
Coping with unfair treatment	① The meaning and type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4.45	0.79
	② Example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4.56	0.73
	③ How to deal with violence in the workplace	4.62	0.71
	④ Meaning and types of unfair treatment	4.63	0.70
	⑤ How to deal with unfair treatment	4.72	0.64
	⑥ Where to get rights relief and assistance	4.67	0.68
	Total	4.61	0.71

(7) 노동인권 교육 영역별 교육 내용의 기타 의견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영역 및 내용 요인을 확인하기 텔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와 중

요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내용에 대하여 표현이나 진술이 어색한 부분은 재진술 및 의견을 기술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역과 항목의 선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0>과 같다.

<Table 30> Other opinions in the area of labor and human rights education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aising employment need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Be careful not to express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socially weak -Emphasis on not only rights but also the content of obligations -Added countermeasures in case of infringement of labor rights -Provides richer practical examples than theoretical -Example materials using pictures and photos are required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reinforced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cluding administrative conten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abor contracts and standard agreements -Consists of various activities to write a labor contract -Suggestion of countermeasures for workplaces that avoid writing labor contracts -Needs various materials and examples to help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Labor Standards Act -Need for prevention education for overdue wages -Needs training on salary management -Needs education on welfare benefits other than salary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der equality is more appropriate than other terms. -Introduction of sexual grievance counseling center in the workplace -Education on how to cope with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necessary -Need for education to increase gender sensitivity -Needs clues and practical examples such as specific pictures or photos -Notice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also become perpetrators through jokes or mistakes -Education on how to communicate and how to use correct language in the workplace is required
Coping with unfair trea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se-oriented education content needs to be organized -Need to explain the practical meaning and approach (possibility) of the place to receive relief (support)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영역의 타당도와 중요도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개방형 질문과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하여 5개 영역의 30개 항목에 대해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내용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 교육 영역

노동인권 교육 영역의 2차델파이 조사 결과는 전체 타당도 평균 4.41, 중요도 평균 4.51로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문항의 평균이 높은 편으로 높은 타당도와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다.

<Table 31> Validity and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labor rights

Labor rights education area	Validity		Importance	
	M	SD	M	SD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4.40	0.76	4.53	0.62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reinforced human rights	4.37	0.79	4.46	0.70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4.36	0.79	4.47	0.65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4.41	0.78	4.50	0.67
Coping with unfair treatment	4.49	0.78	4.60	0.63
Total	4.41	0.78	4.51	0.65

(2)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교육내용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교육내용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을 살펴 볼 때 타당도 평균은 4.30, 표준편차 .80이고, 중요도 평균은 4.39, 표준편차 .71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인 문항의 타당도와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와 같다.

<Table 32> Validity and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Validity		Importance	
		M	SD	M	SD
Educating contents	①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labor	4.14	0.84	4.21	0.77
	② The value of labor	4.18	0.85	4.24	0.76
	③ Workers' legitimate rights	4.37	0.78	4.47	0.68
	④ Labor and Human Rights Violation Case	4.41	0.78	4.50	0.68
	⑤ Changes in labor rights and social weakness	4.28	0.79	4.37	0.71
	⑥ Professional ethics to be observed in the company	4.42	0.77	4.52	0.66
Total		4.30	0.80	4.39	0.71

(3) 인권이 강화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내용

인권이 강화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내용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을 살펴 볼 때 타당도 평균은 4.25, 표준편차 .82이고, 중요도 평균은 4.35, 표준편차 .73으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인 문항의 타당도와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3>과 같다.

<Table 33> Validity and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reinforced human rights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reinforced human rights		Validity		Importance	
		M	SD	M	SD
Educating contents	① The concept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4.07	0.85	4.18	0.78
	② Types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4.10	0.84	4.17	0.81
	③ Procedure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4.17	0.85	4.25	0.78
	④ Preparation of standard agreement for field practice	4.32	0.82	4.45	0.69
	⑤ Writing consent form for participation in industry field training	4.37	0.77	4.47	0.67
	⑥ Preparation of labor contract	4.45	0.78	4.57	0.65
	Total	4.25	0.82	4.35	0.73

(4) 근로보호의 이해 교육내용

근로보호의 이해 교육내용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을 살펴 볼 때 타당도 평균은 4.44, 표준편차 .75이고, 중요도 평균은 4.54, 표준편차 .64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인 문항의 타당도와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와 같다.

<Table 34> Validity and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Validity		Importance	
		M	SD	M	SD
Educating contents	① Working hours (practice hours)	4.45	0.75	4.52	0.64
	② Work restrictions	4.36	0.75	4.46	0.67
	③ Rest, holiday, vacation	4.44	0.77	4.54	0.64
	④ Wage (training allowance)	4.49	0.76	4.60	0.62
	⑤ Unpaid wages	4.52	0.74	4.60	0.63
	⑥ Welfare benefits	4.39	0.75	4.49	0.66
	Total	4.44	0.75	4.54	0.64

(5) 양성평등과 성희롱 교육내용

양성평등과 성희롱 교육내용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을 살펴 볼 때 타당도 평균은 4.43, 표준편차 .78이고, 중요도 평균은 4.54, 표준편차 .66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인 문항의 타당도와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5>와 같다.

<Table 35> Validity and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education content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education content		Validity		Importance	
		M	SD	M	SD
Educating contents	① Concept of gender equality	4.21	0.85	4.33	0.75
	② Adult rights	4.38	0.79	4.47	0.69
	③ Concepts and typ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4.45	0.78	4.57	0.64
	④ Exampl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4.47	0.76	4.59	0.62
	⑤ How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4.55	0.76	4.67	0.61
	⑥ Sexual violence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4.51	0.76	4.61	0.65
	Total	4.43	0.78	4.54	0.66

(6) 부당대우 대처 교육내용

양성평등과 성희롱 교육내용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을 살펴 볼 때 타당도 평균은 4.47, 표준편차 .77이고, 중요도 평균은 4.57, 표준편차 .63으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인 문항의 타당도와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과 같다.

<Table 36> Validity and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 for dealing with unfair treatment

Dealing with unfair treatment		Validity		Importance	
		M	SD	M	SD
Educating contents	① The meaning and type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4.37	0.78	4.45	0.66
	② Example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4.47	0.76	4.56	0.64
	③ How to deal with violence in the workplace	4.54	0.76	4.64	0.59
	④ Meaning and types of unfair treatment	4.42	0.78	4.52	0.65
	⑤ How to deal with unfair treatment	4.54	0.76	4.64	0.61
	⑥ Where to get rights relief and assistance	4.49	0.78	4.60	0.61
	Total	4.47	0.77	4.57	0.63

3. 노동인권 교육의 영역 및 내용 요인

<표 37>과 같이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교육의 영역과 내용 요인은 5개 영역, 30개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Table 37> Areas and contents of labor rights education

Education Area	Education contents
Workers'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labor ② The value of labor ③ Workers' legitimate rights ④ Labor and Human Rights Violation Case ⑤ Changes in labor rights and social weakness ⑥ Professional ethics to be observed in the company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with reinforced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e concept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② Types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③ Procedure of learning-oriented field practice ④ Preparation of standard agreement for field practice ⑤ Writing consent form for participation in industry field training ⑥ Preparation of labor contract
Understanding of labor prot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Working hours (practice hours) ② Work restrictions ③ Rest, holiday, vacation ④ Wage (training allowance) ⑤ Unpaid wages ⑥ Welfare benefits
Gender equality and sexual hara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Concept of gender equality ② Adult rights ③ Concepts and typ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④ Exampl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⑤ How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⑥ Sexual violence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Coping with unfair trea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e meaning and type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② Examples of violence in the workplace ③ How to deal with violence in the workplace ④ Meaning and types of unfair treatment ⑤ How to deal with unfair treatment ⑥ Where to get rights relief and assistance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권이 강화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에 따라 노동인권 현장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교육 자료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교육 영역 및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및 실태 분석에서, 우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현재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의 사전교육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특수학교에서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운영하고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서도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18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어(교육부, 2018),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의 예방적 차원에서 특수교사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사전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만큼 현재 특수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은 필요한 지원 등이 부족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인권 교육 지원과 교육자료에 대해서는, 노동인권 교육 지원과 교육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특수교육 현장은 교육자료의 부족, 노동인권 교육 관련 인식 및 이해 부족, 전문성 관련 연수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실습에 어려움이 있다.

노동인권 교육에서 필요한 지원 영역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 및 프로그램과 교육 매뉴얼 개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실천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산업현장과의 네트워크, 교육매뉴얼 개발, 그리고 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지원 요구들 가운데 시급한 지원 영역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실습 참여 전 노동인권교육 등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학생은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고 일반화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지녔기 때문에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기 보다 맞춤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의 현장실습을 위해 개발된 교육용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정도이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장애학생을 위해 개발된 노동인권 교육 자료는 거의 없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2019)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경기도교육청, 2019)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학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

노동인권 교육의 책임자와 적절한 시간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담당 교사, 진로·직업교육 교과교사, 특수학교 진로상담 교사가 책임자이며, 적절한 시간으로는 진로·직업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교과 수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를 고려한 노동인권 매뉴얼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동인권 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특수학교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보다 훨씬 많고,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교육자료, 교육시간, 유관기관 협력 등에서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노동인권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영역이 교육자료 및 교육 시간의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노동인권 교육관련 이해 및 교육자료의 부족임을 감안 할 때 노동인권과 관련된 인식 전환 및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는 노동인권 교육담당자는 진로·직업교육 교사, 담임교사, 현장실습 담당교사이고, 교육 시간은 진로·직업 관련 교과시간, 타교과와 통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인권 교육 담당자 및 적절한 시간으로 진로·직업교육 교사와 진로·직업교육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주로 진로·직업교육 유관기관에서 개발한 자료나 교과서 및 보완자료, 교육청 개발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어 인권이 강화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에 따라 노동인권 현장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형 노동인권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영역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영역과 내용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를 분석했다. 노동인권 교육은 5개의 영역(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침해, 인권이 강화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근로보호의 이해, 양성평등과 성희롱, 부당대우 대처)과 30개의 교육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행된 노동인권 교육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자료는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로 제작되어 수업의 활용도가 높고 노동인권 지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자료는 노동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표준 교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표준안의 교육 내용 구성을 보면 노동의 의미와 올바른 직업관, 노동권의 역사와 노동법의 기본정신, 입사에서 퇴사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 등 6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용 파워포인트, 학생을 위한 활동지가 제공되어 진다. 하지

만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적은 차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과 수업시간에 활용하기가 불편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애인이 노동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형식으로 5개 장으로 구성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그림을 활용한다. 하지만 학생 참여형 활동이 부족하다. 따라서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교육 영역과 내용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활용한 활동 중심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교사를 위한 파워포인트가 제공되어야 하고, 발달장애인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운 글과(김성희, 신현기, 2020) 그림을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하고(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19; 서선진, 손지영, 이정은, 2014),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인권이 강화된 학습중심 현장실습(교육부, 2019), 근로보호의 이해, 양성평등과 성희롱, 부당대우 대처 등의 핵심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Gyeonggido Human Rights Cent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2015). *2015 Counseling case report*. Gyeonggi: Gyeonggido Human Rights Cent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2015), **2015년 상담사례보고회 자료집**. 경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9). *Youth labor rights education*. Uijeongbu: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교육청 (201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2019). *2019 Employment surve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eoul: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 Lee, J. G., Ryu, S. W., & Seo, S. G. (2011). A study on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for improving the worker's safety awareness safety awar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6*(6), 90-96.
[이장국, 류시욱, 서성구 (2011).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6**(6), 90-96.]
- Lee, S. H. (2017). Perception of teachers on human rights and education for human right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이승학 (2017). 지적장애학생의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3). *Explanation of employment and labor terms*. Gyeonggi: Employment and Labor Training Institute.
[고용노동부 (2013). **고용노동 용어 해설**. 경기도: 고용노동연수원]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0). *2019 Status of industrial accidents*. Gyeonggi: Employment and Labor Training Institute.
[고용노동부 (2020). **2019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연수원]
- Ministry of Education (2018).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8).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9). *Learning-centered field training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9).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9). *Industrial safety manual for field practice in vocational high school*.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19).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20). *2020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20). **2020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20). *2020 Special education operation pla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2020). **2020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세종: 교육부]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Safety education guidebook for life cycle*. Sejong: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국민안전처 (2016).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 세종: 국민안전처]
-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2018). *Research on labor human rights textbook development*.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2019). *2019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국가인권위원회 (2019).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2019). *20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statistics*.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국가인권위원회 (2019). **2019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1). *Special education survey*. Cheonan: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국립특수교육원 (2011). **특수교육실태조사**. 천안: 국립특수교육원]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6). *2016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Cheonan: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국립특수교육원 (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천안: 국립특수교육원]
- Park, H. C. (2006). Coordination of programs among community agencies for vocational transi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8(3), 103-127.

[박희찬 (2006). 장애학생의 직업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간의 프로그램 연계. **특수아동교육연구**, 8(3), 103-127.]

Park, G. H., Jeong, E. H. (2016). A research of the state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eachers' Perception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placed in special class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 (2), 241-265.

[박가희, 정은희 (2016).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1(2), 241-265.]

Seoul Office of Education (2018). *Seoul' student labor rights survey*. Seoul: Seoul Office of Educ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Woo, Y. G., Kim, H. T. (2016). Performance and development plan of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class teacher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7 (4), 43-66.

[우이구, 김현태 (2016).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43-66.]

<국문 초록>

장애학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실태 및 교육 영역과 내용 탐색

박 정 식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교육영역 및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있다. **[방법]**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이동의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 영역을 구성하기 위해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Win 21.0 버전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델파이 분석은 타당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CVR) 등을 산출하였다. **[결과]**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노동인권 교육의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노동인권 교육 지원과 교육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의 실태에서 특수학교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특수학교가 실시하는 학교보다 많고,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자료, 교육시간, 유관기관 협력 등에서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진로·직업교육 교사, 담임교사,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진로·직업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직업 유관기관에서 개발한 자료, 교육청 개발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학생 노동인권 교육 영역과 내용은 5개의 영역(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침해, 인권이 강화된 학습중심 현장 실습, 근로보호의 이해, 양성평등과 성희롱, 부당대우 대처)과 30개의 교육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노동인권 교육의 인식 및 실태와 교육영역 및 내용이 노동인권 현장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교육 자료를 공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노동인권, 장애학생, 현장실습,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사

논문 접수(Received): 2020. 11. 10.. / 심사 시작(Examined): 2020. 11.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0. 12. 08..